

세상을 아름답게, 평생건강 With You!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장 리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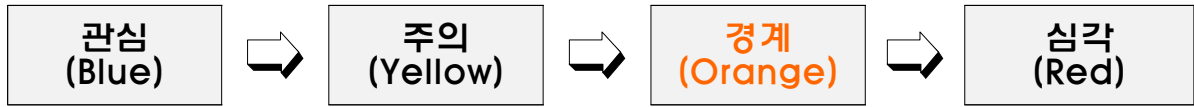


2020. 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기준 안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 질병관리본부



※ 작성일(2020.1.31.)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에 해당됨

◆ **일반사항(급여종류 전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평가기준 예외 적용

- '주의' 이하의 단계일 경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하여 평가기준 충족해야만 인정함
-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 자제, 외출·외박 제한 (외부인 출입제한,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등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 일부를 한시적 예외적용 ... **【붙임】**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변경 시 평가지표 적용 방법

-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기존대로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적용함

(예시)

- ◆ '20년 5월 '경계' → '주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 시행 지표 정상 적용
- ◆ '20년 6월 '경계' → 주의'이하 단계 변경 : '20년 6월 반기별(상반기) 시행 지표 미실시 하여도 인정

○ **예외적용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적용방법)**

재가급여		시설급여	
평가요소	급여종류(지표번호)	평가요소	시설(공·생)지표번호
직원회의	요(2),목(2),간(2)	운영위원회	3(3)
방문상담관리	요(14),목(15),간(14)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교류	11(10)
자원봉사자	주(3),단(3)	간호 및 의료서비스	37(36)
가족과의 소통	주(25)		
수급자 상담관리	복(13)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공통 : 일반사항

Q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요(2), 목(2), 간(2) 직원회의

Q2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일부만 참석하여 직원회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참석 대상의 50%이상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나요?
A2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일 경우 인정되므로 감염병 관련 증상이 없는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실시해야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및 격리자 등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누적참석률이 50%이상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14), 목(15), 간(14) 방문상담관리

Q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매월 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3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감염병 관련 유사 증상이 직원(또는 수급자 등)에게 나타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27), 목(29), 간(28) 주(42), 단(39) 사례관리회의

Q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례관리회의를 미루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A4	직종구분 없이 2인 이상 참여하여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거나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더라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므로 미실시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공통 : 주(3), 단(3) 자원봉사자

Q5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주(25) 가족과의 소통

Q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보호자들이 모일 수 없는데 보호자 회의를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나요?
A6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보호자 회의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주(37) 프로그램, 단(36) 기능향상 프로그램

Q7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프로그램 제공자가 외부인으로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미 실시하여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7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합니다.

복(13) 수급자 상담관리

Q8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방문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8	평가지표 13에 따라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나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유선상담만 실시한 경우에도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사항

Q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Q2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 예시 : 2020년 3월 '경계'단계에서 '주의'로 변경 시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미 실시하여도 인정됨(2020년 2월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 시 1분기 회의 실시해야함)

평가지표 11(10)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교류

Q3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 37(36) 간호 및 의료서비스

Q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촉탁의(계약의사)가 방문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커 수급자가 진찰을 거부할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4	계약의사(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 41(39)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2(40) 여가활동서비스

Q5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을 미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5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합니다.